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38호
----------	--------

제출년월일 2023. 6.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환경부에서 요청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개선안 반영
-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세부사항 보완

2. 주요내용

- 가. 배수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3조)
- 나. 개별건축물 및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정비(안 제19조 및 제21조)
- 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조항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4. 3. ~ 4. 23.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
 - 나) 경기도 :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배수설비 설치자가 개인하수도 시설물을 시장에게 이관절차를 이행하고 승인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를 “필요한 경우” 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적용하여” 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를 “김포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용도변경” 을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로, “인허가시” 를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 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에 단위단가”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수발생량” 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 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하수발생량은” 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은” 으로, “하수발생량 원단위” 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 원단위” 로, “기준으로 산정한다” 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단위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하수발생량” 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 으로, “하수량” 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하수발생량” 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제6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에 의거 산정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riangleright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 하수관로 및 슬러지처리시설을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 관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사용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β)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imes (1 + \beta)$$

$$\triangleright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 수질오염 부과계수(β) = $f(C)$

$$= f\left(\frac{\text{연계처리 폐수의 수질}}{\text{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right)$$

-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할 수 있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표준값 예시) >

유기물질 농도비율(C)	1.0 이하	1.0<C≤1.3	1.3<C≤1.7	1.7<C≤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	0	0.1	0.2	0.3	0.4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하수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하수과장 권 재 욱
	팀 장 직위·성명	하수시설팀장 임 수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공업서기 박 철 진(☎449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생략)</p> <p>2. 시장은 <u>배수설비 설치자가 개인하수도 시설물을 시장에게 이관절차를 이행하고 승인되었을 경우에 한하여</u>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p> <p>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u>적용하여</u> 산정한다.</p> <p>2. · 3. (생략)</p> <p>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p>	<p>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필요한 경우</u> ----- ----- ----- -----.</p> <p>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 ----- ----- --.</p> <p>1. ----- ----- ----- <u>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 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u>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 -----</p>

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생략)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생략)

② ~ ④ (생략)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사용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 김포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
-----.

5. (현행과 같음)

6. -----
-----.

가. -----
-----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에 단위단가----- . <단서 삭제>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 -----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생략)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은 -----
-----공공하수처리 시설 발생량 원단위-----

-----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단위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의 실시 설계보고서 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 -----
-----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

2.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량-----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영」 제22조 제3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당 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m³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α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되어 설치한 차집관(간선관거) 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타행의 사업의 경우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사용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당 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m³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α = (1 + R₁) × ... × (1 + R_n)

▷ R(x) :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되어 설치한 차집관, 하수관로 및 슬러지처리시설을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타행의 사업의 경우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사용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β)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imes (1 + \beta)$$

▷ α = (1 + R₁) × ... × (1 + R_n)

▷ R(x) :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수질오염 부과계수(β) = f(C)

$$= f\left(\frac{\text{연계처리계수의수질}}{\text{공공하수처리시설의계획유입수질}}\right)$$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C)의 질량(또는 부피)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연계처리 계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배출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할 수 있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표준값 예시) >

유기물질 농도 비율(C)	1.0 이하	1.0 < C ≤ 1.3	1.3 < C ≤ 1.7	1.7 < C ≤ 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	0	0.1	0.2	0.3	0.4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단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B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값, 중요물질 수질오염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하수도법

-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삭제 2020.2.14.>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삭제 2016.10.12>

제8조<삭제 2016.10.12>

제9조<삭제 2016.10.12>

제10조<삭제 2016.10.12>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산정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개인하수도 시설물을 시장에게 이관절차를 이행하고 승인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한다.

2.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도급수조례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요금의 업종구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업종구분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후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해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김포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소속 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7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이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사용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 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2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2019.6.26>

제23조(분뇨수집·운반의 수탁처리) 인접 시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그 밖에 수탁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에서 분뇨처리장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된 분뇨를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의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

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의 조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김포시 물가상승률에 따라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처리비를 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 ③ 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반입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징수한다.
- ④ 분뇨 수집·운반 실적에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처리비,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주민등록법」상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8.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차이수량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9.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10.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수도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11.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내 공공하수도 사용자(공공기관 제외)에게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분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는 미납요금 \times 3/100 \times 12개월 \times 연체일수/365를 적용한다.

2. 납기 경과 후 1개월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

② 제1항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독촉고지분은 상수도 사용료 독촉고지와 납기를 같이 하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9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이외 징수금 : 5년

제30조(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